

	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1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17. 1. 16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수·학습 및 시설·설비 등 장애학생의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대학의 장애학생은 학사지원 및 학생활동 전반에 관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, 이를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.

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3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운영하며,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 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학습권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생활·진로·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1.16>
5.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담당직원이 실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4.2.6>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4.2.6>

③ <개정 2014.2.6><삭제 2017.1.16>

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지원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지원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학생 운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2014.2.6>

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으로 학사지원처장, 기획처장, 입학학생처장, 행정지원처장이 된다.<개정 2014.2.6><개정 2017.1.16>

③위원위촉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.<개정 2014.2.6>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.<개정 2014.2.6>

제8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제9조(지원요청) ①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4.2.6>

②센터는 ①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6>

제10조(심사청구 등) ①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9조 ②항에 대한 결정과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4.2.6>

②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<별지 1호>를 센터에 제출하며,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6>

③위원회는 ②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<별지 2호>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6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